

# 工業所有權 相談解説

## 特許法上 代理人과 特許管理人등

**問** ① 特許法上 代理人이란 무엇이며 特許管理人과는 어떠한 差異가 있는지요?

② 特許와 Know-How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③ 製品을 生産해서 販賣한 結果 反應이 좋아 特許出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答** ① 特許法上 代理人이란 當該 節次의 主體인 當事者 스스로가 節次를 밟는 代身에 第3者가 節次를 밟고 그 法律效果를 本人인 當事者에게 歸屬시키는 制度입니다.

代理人의 種類로서는 法定代理人과 任意代理人이고 任意代理人으로서는 通常의 代理人(在內者의 代理人)과 在外者의 代理人 즉, 特許管理人이 있습니다.

이중 特許管理人이란 國內에 住所나 營業所가 없는 者에 대하여 特許에 관한 節次를 本人을 代身하여 밟아주는 特許에 관한 代理人을 말합니다. 이것은 特許廳이 國內에 住所나 營業所를 가지지 아니한 者가 節次를 밟는 경우의 번거로움을 피함으로써 特許廳에서의 節次를 圓滑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特許管理人은 特히 授與된 權限 外에 一切의 節次(特許出願의 取下등 不利益行爲도 포함됨)와 特許法 등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處分에 관한 訴訟에 대하여도 本人을 代理할 수 있으나 特許廳에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는 點이 通常의 代理人과 다른 點입니다.

② Know-How란 單獨 또는 結合하여 工業의 目的에 도움이 되는 어떤 種類의 技術을 完成하고 또한 그것을 實際로 應用하는데 必要한 秘密의 技術의 知識과 經驗으로서 特許와 마찬가지로 讓渡의 對象도

되고 또한 實施許諾의 對象이 되는 重要한 知的財産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特許의 경우에는 그 內容이 一般에게 公開되어 비로소 權利가 되지만 Know-How의 경우에는 反對로 秘密을 지키는 것이 Know-How의 必要한 條件이라고 하는 點에서 特許와 Know-How는 本質의 으로 다른 面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兩者의 性格이 다른 까닭에 特許權이 他人에 依하여 侵害되었을 때에는 特許權의 이름으로 이것을 侵害라고 하여 排除할 수가 있는데 反하여 Know-How의 경우에는 그것이 漏洩되어 模倣하여도 이것을 抑制할 手段이 없으며 內容이 漏洩됨에 따라 Know-How의 知的 財産의 價値는 점차 稀薄하게 되어 드리어는 Know-How 그 自體가 滅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같이 特許와 Know-How에 있어서의 公開와 非公開(秘密性)라고 하는 差異는 排他性의 有無라고 하는 知的 財産에서 볼때 本質의인 差異가 있다 하겠읍니다.

③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發明은 産業에 利用할 수 있는 發明으로서 新規性 및 進歩性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新規性이란 當該 發明이 特許出願前에 國內에서 公知 公用된 것이 아니거나 國內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記載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進歩性이란 當該發明이 特許出願前에 公知, 公用된 發明이나 頒布된 刊行物에 記載된 發明에 依하여 容易하게 發明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本件의 경우에는 出願하기 前에 이미 市販하였으므로 新規性이 상실되어 特許를 받을 수 없읍니다. 以後 新製品을 開發하였을 시에는 市販이나 公開하기 前에 特許出願을 하여야 합니다. <※>

<編輯室>

◎ 명칭 변경 알림 ◎

중앙공업소유권연구소(구명칭)→김명신특허법률사무소(신명칭)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69-5(삼정빌딩 1503호) 전화: 서울 778-4345·7